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주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150
----------	-------

발의연월일 : 2023. 2. 21.

발의자 : 이주환 · 김학용 · 이현승  
권명호 · 김성원 · 정우택  
하영제 · 지성호 · 전봉민  
이명수 · 구자근 · 서일준  
김승수 · 양금희 의원  
(14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이하 “대형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급수설비(급수관, 저수조 등)의 소독 및 수질검사, 그 밖의 위생에 필요한 조치(이하 “소독등위생조치”라 한다)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반수도사업자는 해당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의 소독등위생조치 이행 여부를 지도·감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22년 9월 감사원의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일반수도사업자가 대형건축물 저수조에 대한 소독등위생조치 이행 여부에 대한 지도·감독 누락 사례가 많아 저수조에 대한 위생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이는 현행법 상 대형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저수조의 설치 및 보유와 관련하여 일반수도사업자에게 신고하는 의무 규정

이 없고, 이로 인해 일반수도사업자는 관리 대상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관련 규정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이에 대형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저수조를 설치한 경우 그 보유현황을 일반수도사업자에게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제재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저수조의 위생관리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33조제2항 신설 등).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 제목 중 “조치”를 “조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전단 중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64조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을 건축물이나 시설의 관리자로 본다. 이하 제3항 · 제4항과 제36조제1항에서 같다)”를 “제2항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로 한다.

②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64조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을 건축물이나 시설의 관리자로 본다. 이하 제3항부터 제5항까지와 제36조제1항에서 같다)가 저수조를 설치한 경우 일반수도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관리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3조제2항제12호 중 “제4항”를 “제5항”으로 한다.

제83조제6호 중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제33조제1항 · 제3항 · 제4항”으로 한다.

제87조제4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일반수도사업자에게 저수조 설치현황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저수조의 설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저수조를 운영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제3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3조(위생상의 <u>조치</u>) ① (생 략) <u>&lt;신 설&gt;</u></p> <p>②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 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공동주택관리법」 제 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 택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64조 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을 건축 물이나 시설의 관리자로 본다. 이하 제3항부터 제5항까지와 제36조제1항에서 같다)가 저수 조를 설치한 경우 일반수도사 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 만, 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 관리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p> <p>③ 제2항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 ----- -----</p>	<p>제33조(위생상의 <u>조치 등</u>) ① (현 행과 같음)</p> <p>②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 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공동주택관리법」 제 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 택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64조 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을 건축 물이나 시설의 관리자로 본다. 이하 제3항부터 제5항까지와 제36조제1항에서 같다)가 저수 조를 설치한 경우 일반수도사 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 만, 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 관리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p> <p>③ 제2항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 ----- -----</p>

<p><u>관리자(「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64조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을 건축물이나 시설의 관리자로 본다.</u></p> <p><u>이하 제3항 · 제4항과 제36조제1항에서 같다)는 급수설비(일반 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관리권을 가지는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한 소독등위생조치를 하여야 한다.</u> 이 경우 일반수도사업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검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p> <p><u>③ ~ ⑤ (생 략)</u></p>	<p>-----</p> <p>-----.</p> <p>-----</p> <p>-----</p> <p>-----.</p>
<p>제63조(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생 략)</p> <p>② 인가관청은 수도사업자(주택자를 포함한다) 또는 전용수도의 설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에 따른 인가를 취소하거나, 그 효력의 정지, 공사의 중지, 공작물의 개축 · 이전 · 변경 및 제</p>	<p><u>④ ~ ⑥ (현행 제3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u></p> <p>제63조(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조치) ① (현행과 같음)</p> <p>② -----</p> <p>-----</p> <p>-----</p> <p>-----</p> <p>-----</p> <p>-----</p> <p>-----</p>



7. ~ 11. (생 략) 제87조(과태료) ① ~ ③ (생 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7. ~ 11. (현행과 같음) 제87조(과태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1. ~ 5. (생 략) <u>&lt;신 설&gt;</u>	1. ~ 5. (현행과 같음) <u>5의2.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일반수도사업자에게 저수조 설치현황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u>
6. ~ 9. (생 략) ⑤ (생 략)	6. ~ 9.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